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이달희·김대식·김상훈
김종양·서천호·박형수
최보윤·윤재욱·이진숙
임이자·서일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5년마다 수립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.

